

『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「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」 제정 및 「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 개정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 재구성으로
위원의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

3. 주요내용

- 가. 기존 「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」 폐지 및 「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」 제정으로 환경정책위원회 일부 용어 변경(안 제20조, 제22조)
- 나. 「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 개정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신설로 환경정책위원회 기능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 부분 삭제
(안 제20조, 제21조, 제2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환경정책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 - 상위법인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이 폐지되고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,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환경정책위원회 기능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 - 행정의 통일성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